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지역경제과	1
2. 도화·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		4

(2012. 4. 1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[검토보고]

도화·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

1. 안 건 명

○ 도화·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

2. 제출현황

○ 제출일자 : 2012년 4월 4일

○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○ 회부일자 : 2012년 4월 5일

○ 의안번호 : 12-18

3. 안 제출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-104(2011. 11. 24)호로 상권활성화구역지정된 도화·용강동 상점가에 대하여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임.

4. 주 요 내 용

가. 사업 개요

○ 법적근거 :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4

○ 위 치 : 도화동 179 -1 번지, 용강동 40- 5번지 상점가 일대

○ 면적 및 점포수 : 329,000㎡, 620개 점포

○ 사업기간 : 2011년 ~ 2014년

나. 소요 예산

○ 총 96억 3,100만원

○ 경영현대화 : 15억 5,900만원(전액국비 - 상권관리기구 집행)

○ TM 인건비 및 법인운영비 : 1억 5,200만원(2년)

○ 시설현대화 : 79억 2,000만원

(국비, 시비, 구비, 민자부담금 - 우리구 집행)

다. 추진 개요

○ 2011. 5. 25 : 시범사업대상지 선정

○ 2011. 11. 24 : 도화.용강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고시

○ 2011. 12. 23 : 마포나루 상권활성화법인 설립인가(중소기업청)

○ 2011. 2. 21 : 경영현대화 사업비 및 운영비 교부

(시장경영진흥원)

라. 향후 추진계획

○ 2012. 3. 15 ~ 3. 29 : 주민 공람

○ 2012. 4. 13 ~ 4. 19 : 구의회 의견청취

○ 2012. 4. 24 :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제출

○ 2012. 4. 30 :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

사업계획 승인

○ 2012. 5. 3 : 사업계획 승인 고시

마. 세부추진계획

○ 2011년도

- 경영현대사업비 전액국비로 상권관리기구에 7억 600만원 교부(2012. 2. 21)
- 스토리 발굴 및 적용사업, 지역연계 동아리 육성사업
- 임대용부스 설치사업(마포유수지주차장 활용)
- 축제 및 상인콘서트 등 이벤트 개최

○ 2012년도

- 시설현대화 7억 8,900만원, 경영현대화 6억 2,300만원 중 7,800만원은 민자부담금으로 확보 후 추진예정
- 도화동 상점가 : 상징물 2개소, 가로경관 LED조명 40개소 설치
- 용강동 상점가 : 아치형 조형물 1개소, 가로경관 LED조명 70개소 설치
- 경영 현대화 : 상권브랜드 개발 및 마켓팅 전략 수립

○ 2013년도

- 시설현대화 15억 6,100만원, 경영현대화 3억 2,000만원 중 시설 현대화사업비 15억 6,100만원은 서울시 실사 후 5 ~ 6월경 확정
- 상인교육장 및 협의회 공간 마련(마포유수지주차장 내 시설물390㎡)
- 축제 및 행사 장소 마련(용강동 삼개공원, 도화동 복사꽃공원)
- 스토리텔링 유형화 사업(공원 내 조형물 설치), 미디오 정치 설치
- 경영현대화 : 스토리텔링 기념품 제작 및 판매사업

○ 2014년도

- 시설현대화 55억 7,100만원
- 용강동 2·3구역 재개발,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계획 진행상황 및 스토리 발굴 사업 검토 후 2013. 2월 서울시에 신청
- 구역별 특성을 살린 골목문화 사업
-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관 건립
- 도화·용강동 상점가 연결부 상징성 부여 및 연결

5. 검토의견

동 사업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-104(2011. 11. 24)호로 지정된 도화·용강동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에 대하여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임.

역사·문화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도화·용강동 상점가에 디자인 개선, 상시 축제 행사 개최, 브랜드 개발,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개발, 지역정체성 강화 및 홍보효과 극대화, 역사·문화 스토리텔링 개발 등 커뮤니티 복원을 통한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서울시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로 사료됨.